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단기 독학관 정보공개서

(주)에스티유니타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에스티유니타스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번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 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 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2, 30층(신도림동, 디큐브시티 제타워동)

전화 : 070-5080-0577

팩스 : 02-6442-9939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1800-5272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 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 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 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에스티 유니타스	공단기 독학관 외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2, 30층(신도림동, 디큐브시티 제타워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0. 3. 26.	2010. 4. 5.	김정택	070-5080-0577	02-6442-9939
	법인등록번호	110111-4314318	사업자등록번호	119-86-27573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김정택	공단기 독학관 외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2, 30층(신도림동, 디큐브시티 제타워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정택	070-5080-0577	02-6442-993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기타비상무이사	이정우	공단기 독학관 외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2, 30층(신도림동, 디큐브시티 제타워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정택	070-5080-0577	02-6442-993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기타비상무이사	권오상	공단기 독학관 외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2, 30층(신도림동, 디큐브시티 제타워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정택	070-5080-0577	02-6442-993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기타비상무이사	김현승	공단기 독학관 외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2, 30층(신도림동, 디큐브시티 제타워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정택	070-5080-0577	02-6442-993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기타비상무이사	박민주	공단기 독학관 외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2, 30층(신도림동, 디큐브시티 제타워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정택	070-5080-0577	02-6442-993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기타비상무이사	안정호	공단기 독학관 외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2, 30층(신도림동, 디큐브시티 제타워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정택	070-5080-0577	02-6442-993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기타비상무이사	이람	공단기 독학관 외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2, 30층(신도림동, 디큐브시티 제타워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정택	070-5080-0577	02-6442-993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기타비상무이사	유기홍	공단기 독학관 외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2, 30층(신도림동, 디큐브시티 제타워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정택	070-5080-0577	02-6442-993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감사	박완진	공단기 독학관 외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2, 30층(신도림동, 디큐브시티 제타워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정택	070-5080-0577	02-6442-9939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공단기 독학관	
상 호	공단기 독학관 oo점	해당 동 명 표기
상 표 (서비스 표)		등록 4020235590000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220,690,258	189,730,735	30,959,522	146,634,860	3,552,757	179,217,540
2023년	167,996,686	145,046,747	22,949,938	91,074,632	(-)9,621,755	(-)7,900,089
2024년	94,027,720	69,592,247	24,435,473	72,556,639	(-)2,268,951	1,352,582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김정택	대표이사	2021.09.27.~현재	(주)에스티유니타스 대표이사	회사업무총괄
비관련 임원	이정우	임원	2020.06.08.~현재	기타비상무이사	등기임원
비관련 임원	권오상	임원	2020.06.08.~현재	기타비상무이사	등기임원
비관련 임원	김현승	임원	2020.06.08.~현재	기타비상무이사	등기임원
비관련 임원	박민주	임원	2020.06.08.~현재	기타비상무이사	등기임원
비관련 임원	안정호	임원	2020.06.08.~현재	기타비상무이사	등기임원
비관련 임원	이람	임원	2020.06.08.~현재	기타비상무이사	등기임원
비관련 임원	유기홍	임원	2020.06.08.~현재	기타비상무이사	등기임원
비관련 임원	박완진	감사	2020.06.08.~현재	감사	등기임원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 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1	8	26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에스티 유니타스	가맹사업 경영	2021.03.08.~현재	커넥츠 프랩 공서관이라는 가맹사업 경영 (등록번호 : 20210310)
가맹본부	(주)에스티 유니타스	가맹사업 경영	2021.04.08.~현재	커넥츠 프랩 수능관이라는 가맹사업 경영 (등록번호 : 20211941)
가맹본부	(주)에스티 유니타스	가맹사업 경영	2021.03.08.~현재	커넥츠 프랩 독서실이라는 가맹사업 경영 (등록번호 : 20211943)
가맹본부	(주)에스티 유니타스	가맹사업 경영	2021.04.01.~현재	커넥츠 프랩 스터디카페라는 가맹사업 경영 (등록번호 : 20211942)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뷰티르샤	가맹사업 경영	2003.06~현재 *2025년 1월 특수관계인에서 제외	MBC아카데미뷰티학원이라는 가맹사업 경영 (등록번호 : 20100100104)

○ 위 표에서 커넥츠 프랩 공서관, 커넥츠 프랩 수능관, 커넥츠 프랩 독서실, 커넥츠 프랩 스터디카페의 기간(시작일)은 당사가 각 영업표지별로 구분하여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기 전 커넥츠 프랩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타입 구분)한 최초 가맹점의 개점일입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등록 연월일	등록 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공단기독학관	2023.05.17. 등록	등록 4020235590000	(주)에스티유니타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공단기 독학관] 가맹사업 현황

1. 공단기 독학관을 시작한 날 : 가맹계약 체결사실 없음

2. 가맹본부의 연혁

가맹본부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에스티 유니타스	공단기 독학관	김정택	예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2, 30층(신도림동, 디큐브시티 제타워동)

3. 공단기 독학관 업종

영업표지	업종	
공단기 독학관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 교육	공무원 시험 독학관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공단기 독학관]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	-	-	-	-	-	-	-	-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공단기 독학관] 가맹점 수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	-	-	-	-	-
2023	-	-	-	-	-	-
2024	-	-	-	-	-	-

6. [공단기 독학관]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공단기 독학관]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맹본부	(주)에스티 유니타스	커넥츠 프랩 공시관	20210310	공무원 시험 독학관	44/-	50/-	46/-
가맹본부	(주)에스티 유니타스	커넥츠 프랩 수능관	20211941	수능 시험 독학관	12/-	14/-	16/-
가맹본부	(주)에스티 유니타스	커넥츠 프랩 독서실	20211943	독서실	13/-	10/-	8/-
가맹본부	(주)에스티 유니타스	커넥츠 프랩 스터디카페	20211942	스터디카페	6/-	6/-	6/-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역	2024년 말 가맹점 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천원)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 [공단기 독학관] 가맹점의 평균 영업 기간

○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가맹점사업자가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연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년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당사는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가 바로 전 사업연도에 광고비 및 판촉비로 지출한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당사는 가맹사업 외에도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지출한 금액은 이보다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4,451,531	4,451,531	-	
(비공개)	(비공개)	연중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비공개)	연중	(비공개)	(비공개)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전 지점	지점 및 인터넷뱅킹	1588-9999

○국민은행의 계좌가 없을 경우 개설하여야 하며, 가맹금은 가맹계약 체결 이후 3일 이내에 국민은행을 통해 예치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국민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에스티유니타스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항 목		내 용
국민은행 계좌가 있는 사업자	매장 직접 방문시	①가맹계약 체결 → ②은행방문 → ③가맹금 예치 신청서 작성/제출 및 예치 가맹금 입금 → ④가맹금 예치증서를 교부 받아 보관
	인터넷 뱅킹 이용시	①가맹계약 체결 → ②인터넷 뱅킹(www.kbstar.com) 접속 → ③기업지원서비스(가맹금 예치제) 클릭 ④로그인 → ⑤가맹점사업자 서비스 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⑥가맹금 예치신청서 내용 기입 후 예치 가맹금 이체
통장 개설시 필요서류	본인이 개설시	1.은행 방문 전 가맹본부 담당자 유선 연락 2.신분증, 가맹계약서 등 필요 서류 지참 방문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 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 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귀하가 [공단기 독학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최초가맹금내역	금액	포함내역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16,500	가맹점 운영권 부여 및 영업 표지 사용에 대한 대가 및 입문교육에 대한 대가(가맹비 중 2,200)	가맹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가맹사업법 제10조의 경우 일부 반환될 수 있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 받기 위해 지급하는 소멸성 대가(계약금 성격의 금전)
합계	16,500				

2) 계약이행 보증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기한	포함내역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계약이행 보증금	10,000	가맹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가맹계약 상 의무이행 및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 등	계약 종료 시 미지급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제외한 나머지	미 이행 채무 또는 가맹계약 위반 시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최초 가맹금	16,500
계약이행 보증금(부가세 없음)	10,000
합계	26,5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개설기준 : 100석 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233,594				
초도물품	가맹본부	13,000	-	가맹계약 후	7일전 시공 및	책,걸상30set, 물품
인테리어	가맹본부	220,000	2,200	일정별 협의	공급 취소	330㎡(100평)기준
운영관리 시스템/ 성적처리프 로그램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	99	-	업체기준에 따름	업체기준에 따름	월 사용 비용
카드단말기	가맹본부 지정업체	-	-			
컴퓨터	자율선택	440	-			
복합기	자율선택	55	-			월 렌탈 비용
별도금액	화장실, 베란다, 공사소장, 전기승압, 배전압, 통신선 인입, cctv, 용도변경 등					
※ 비고						
▶ 벽체, 천장, 바닥, 페인트, 전기, 조명, 내부사인, 외부간판 1개, 입구 사인물 1개, 인포데크스, 책상,의자set, 사물함, 수납장, 목공작업, 방음공사, 냉난방 공사, 공과잡비						
▶ 해당 금액표는 가맹점 점포의 크기, 선택, 공사 현장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층고, 누수, 철거, 전기, 구조 등 점포의 상황에 따라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는 가맹점의 시설 평준화를 위해 당사와 시공해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1)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점포계약에 따른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3)가맹점 개점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의 준비나 규약 등의 확인과 책임은 가맹점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귀하의 입지 선정이 지연되어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른 추가 발생비용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당사가 규정한 입문교육 수수료	교육청 직원등록자격에 미달되지 않는 자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없는 자 -기타 학원 설립/운영 자격을 갖춘 자
직원	가맹점 실제 운영자인 경우 입문교육 수수료	*당사의 자격기준에 미달 시 당사가 재교육 수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충족 시 직원 으로 채용할 수 있음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공단기 독학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는 가맹금은 한 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수수료	가맹본부	전월 매출의 11%	익월 10일		사용된 비용	
운영관리 시스템/성적처리 프로그램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	월 99	매월 말일		월 비용 선납	선납 사용료 (익월 사용료)
카드단말기	가맹본부 지정업체	-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사용된 비용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가맹지역본부	광고·판촉 분담기준에 의함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	광고시행 이전	광고시행 이후	V.9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협력업체(미지정)	가맹점사업자가 부담	판촉 내용별 별도 공지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가맹지역본부	실비(변동적)	교육 전	교육 전	교육 후	1인 비용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복합기 렌탈비	가맹점사업자 선정업체	월 55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사용된 비용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정해진 금전 지급 의무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바로 전 사업연도의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천원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 당사는 바로 전 사업연도에 [공단기 독학관] 가맹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운영/회원/물품 관리 등	본사규정대로 운영하는지에 대한 관리 조사 실시	수시	가맹계약서 및 영업 규정 위반 시 시정요구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수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당사에 별도로 지급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이 유효기간 만료 등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사업자에게 통지하고 가맹점의 계약 종료 기간까지 가맹사업을 유지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당사로부터 승인받은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교육비와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맹비와 교육비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비고
		양도양수 계약	신규 계약	
최초 가맹금	가맹비	=	16,500	양도양수 계약 시 양도인의 잔여 계약 기간을 부여함
	교육비	2,200	-	
계약이행 보증금(부가세 없음)		10,000	10,000	
합계		12,200	26,500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 등의 지식재산권 및 시스템 등의 사용(홈페이지나 블로그, 지역정보 등 인터넷상의 사용도 포함)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며, 당사로부터 제공 받은 일체의 자료(계약서, 매뉴얼 등)도 반환하여야 합니다. 영업표지 등의 철거·원상복구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당사가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결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이미 제공한 공급품, 비품, 소모품, 시설, 설비 등을 가맹본부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존속기간 동안이나 종료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 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가맹본부와 지사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객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가맹본부와 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 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공단기 독학관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의 거래 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 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물품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품목(단위)	공급가격 (단위: 천원)		구분
	상한	하한	
해당없음			

○당사는 바로 전 사업연도에 [공단기 독학관] 가맹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공단기 독학관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는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공단기 독학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2) 당사가 공단기 독학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온·오프 학습프로그램, 당사가 제시하는 콘텐츠, 자료와 당사의 저작·명칭이 표기된 권장하는 모든 물품	당사가 지정, 제시한 학습 프로그램 이외의 품목을 회원에게 판매할 수 없으며, 당사가 제시한 기준의 학습시스템과 기준으로 가맹점사업자 소속의 모든 회원을 등록 및 운영해야 합니다.	물품공급 중단,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물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 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물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물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당사 및 계열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및 제품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콘텐츠 및 학습시스템을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에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물품공급 중단,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물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
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경쟁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
되는 가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가 정한 권장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판매
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 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 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 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 회사는 가맹 계약 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
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공무원 시험을 전문으로 하는 독학관	공단기 독학관, 커넥츠 프랩 공시관	-

2) 영업 지역의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 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 지역 설정 기준	설정방법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행정구역상 동 단위당 1개	가맹계약서에 영업 지역 표시 (지도별첨)
* 특수상권이라 함은 대형 입시학원 밀집지역, 고시촌, 공무원 학원 밀집지역, N수생 학원 밀집지역, 주거 밀집지역 등에 상응하는 상권 * 이 경우 귀하의 영업 지역은 해당 점포가 위치한 건물 내로 한정 * 왕복 4차선 이상의 도로, 철길, 강 등에 의해 상권이 구분되는 경우 별개의 상권으로 분리하여 설정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 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 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자 검토 → 영업 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 부터 90일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 재조정 등 조건 변경에 대한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 지역 변경 완료 및 계약 갱신	가맹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동의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영업지역 변경 등 계약갱신 진행 후 신규 입점 가능

4) 영업 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귀하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 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 활동을 하는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합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공단지 독학관 가맹사업자의 영업 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제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향후 사업 영역이 확장,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위 내용은 향후 추가·변경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제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향후 사업 영역이 확장,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위 내용은 향후 추가·변경될 수 있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 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	-	-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계약 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 계약 및 갱신 기간

○공단기 독학관 가맹사업의 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가맹 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 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D-60일 이전

예→E, 아니오→A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 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 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 및 대금의 결제, 인·허가 취득 및 법령준수, 교육·훈련 등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7조 3항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이나 영업 방침을 가맹점 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아니한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서비스기법 또는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의 중요한 영업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가맹본부의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계약서상의 금전지급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38조 1항
○가맹계약서 제5조 가맹점의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맹계약서 제8조 인·허가 취득 및 법령준수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맹계약서 제9조 제6항 제4호를 위반한 경우	
○가맹계약서 제16조 교육 및 훈련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맹계약서 제17조 교육·훈련의 종류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맹계약서 제18조 인테리어 및 설비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맹계약서 제19조 직원채용 및 교육·훈련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맹계약서 제20조 보험의 가입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맹계약서 제22조 운영의 표준화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맹계약서 제23조 영업일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맹계약서 제24조 물품 등의 주문 및 관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맹계약서 제26조 수수료 및 대금의 결제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맹계약서 제29조 광고 및 판촉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맹계약서 제30조 보고의무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맹계약서 제31조 영업비밀유지의무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맹계약서 제32조 경업금지의무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맹계약서 제33조 감독 및 시정요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맹계약서 제35조 영업의 양도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

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8조 2항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 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 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 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같은 사항을 다시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1개월 전에 가맹본부에 계약 해지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로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가맹 계약의 종료 시까지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가맹점을 정상 운영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당사 담당자 검토→수정계약서(안)작성→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가맹점사업자 동의→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와 관련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2개월 전)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 승인 여부 통지(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 당사 1800-5272 또는 가맹지역본부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아래 표와 같이 교육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수인은 신규 가맹계약과 동일한 가맹비와 교육비를 추가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비고
		양도양수 계약	신규 계약	
최초 가맹금	가맹비	-	16,500	양도양수 계약 시 양도인의 잔여 계약 기간을 부여함
	교육비	2,200	-	
계약이행 보증금(부가세 없음)		10,000	10,000	
합계		12,200	26,500	

○양수인에게 양도한 가맹점사업자는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와 계약한 영업지역내에서 본 계약과 동종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 등은 효력이 없으며, 당사는 귀하와의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의 승계의 의사를 증빙 서류와 함께 서면으로 첨부하여 가맹본부에 통지하여 가맹본부, 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가능 (상속인 사후 통지 시)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 → 당사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 행사	가능 (사전 서면통지 후 가맹본부 승인 시)	가맹점 사업자가 지정한 범위내의 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 → 당사검토 → 대리 행사 가능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대리행사 가능	
업무 위탁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 → 당사검토 → 업무 위탁 가능 여부 통지 → 업무 위탁 가능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귀하가 계약기간 동안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공단기 독학관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공무원 시험을 전문으로 하는 독학관 및 독서실, 스터디카페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자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 당사 1800-5272 또는 가맹지역본부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공단기 독학관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07:00~24:00	365일 연중무휴 영업	문의 : 당사 1800-5272 또는 가맹지역본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무단으로 휴업할 수 없으며,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는 상호 간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근로관계 및 종업원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원활한 가맹점 운영을 위해 종업원에게 운영 매뉴얼 지급 및 영업 지도를 하셔야 합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항목	감독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 부서
학습서비스의 표준화	담당자 가맹점 방문 → 서비스 표준화 확인 → 점검 또는 관리표 작성 → 가맹점 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필요시(수시)	문의 : 당사 1800-5272 또는 가맹지역본부
점포의 청결	담당자 가맹점 방문 → 청결도 확인 → 점검 또는 관리표 작성 → 가맹점 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점검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공지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공단기 독학관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분담비율		
		가맹본부	가맹지역본부	가맹점사업자
전국광고	복합 브랜드광고	70%		30%
	가맹점모집광고	50%	50%	-
개별광고/ 판촉활동	가맹점모집광고	-	100%	
	가맹점개별행사	-	-	100%
	가맹점판촉활동	-	-	100%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 또는 사전 약정을 받아 진행합니다.

○판촉의 경우, 기획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고 판촉물 구입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전국단위 광고의 가맹점부담액은 가맹점부담액 총금액을 가맹점 매장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개별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사업자 부분을 분담합니다.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제공하는 경품·기념품 등의 비용, 판촉활동을 위한 통일적 전단지·리플렛·카탈로그의 제작비용,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발행비용 등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는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브랜드 이미지를 위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공단지 독학관의 가맹사업 운영상 제공받은 경영노하우와 영업규정(표준운영규정), 기타 이에 준하는 영업비밀(자료의 유·무형, 구두로 제공한 것인지 문서 형태인지 불문)을 유지하여야 하며, 본 계약상의 가맹사업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의 서면동의 없이 영업규정(표준운영규정) 등 각종 자료를 임의로 인쇄, 복사, 분리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 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추가하여 위약별로 정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제34조 손해배상	
①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가맹계약 체결 후, 가맹점 개점일 이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인 변심에 의해 가맹 계약을 해지 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다만, 가맹점이 양도한 경우나 당사가 가맹사업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된다.
1)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 최초 가맹금의 10%
2)	계약 체결일로부터 4~10일 : 최초 가맹금의 30%
3)	계약 체결일로부터 11일~가맹점 개점일 이전 : 최초 가맹금의 50%
③	가맹점사업자의 일방적인 변심 또는 귀책사유로 가맹 계약이 중도 해지 된 경우, 위약별로 가맹본부에

1,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가맹점사업자가 제9조제6항제4호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한 당해 월의 수수료 (제26조제1항의 수수료로 매출의 11%를 의미함) 5배를 위약별로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⑤ 가맹점사업자가 제38조 제3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 및 종료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 폐점할 경우, 위약별로 가맹본부에 1,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⑥ 제31조(영업비밀 유지의무)의 규정을 계약 기간 또는 계약 기간 종료 후 위반할 경우 위약별로 가맹본부에 1,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⑦ 제32조(경업금지)의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위약별로 가맹본부에 1,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⑧ 제39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제1항에 규정된 영업표지 등의 철거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지연이자(지체 일수 × 300,000원)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⑨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 계약이 기간 만료, 해지, 가맹점운영권 양도 등으로 종료될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 등을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상계하여 정산한다.
- ⑩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 등의 귀책사유로 가맹본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⑪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일체의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⑫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 가맹본부나 가맹본부 임직원의 명예·신용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가 있다.
- ⑬ 가맹본부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가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8일 내외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8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7~46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4(1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가맹본부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 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illegible]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촉진 행사 시 인력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해당 가맹지역본부에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해 유상 또는 무상으로 회원 모집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 본부 요청시	1.교육 물품 및 회원 모집 등에 따른 마케팅 방법 등 경영지도 2.해당 지역의 특성과 교육시장 동향 분석에 따른 개별 가맹점의 운영방안 지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경영활성화나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맹점에 방문하거나 유선상 으로 관련된 지도를 할 수 있음	가맹본부 부담	문의 : 당사 1800-5272 또는 가맹지역본 부
가맹점 사업자 요청시	3.가맹점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발생시 그 해결을 위한 경영지도	필요 시 가맹본부에 요청하고 가맹본부는 경영지도를 위한 방법 및 일정을 안내하고 이를 귀하가 동의하면 진행함	가맹점 부담 (실비)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귀하에게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 당사는 공단지 독학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입문교육	신입 가맹점 운영	당일	계약 후 1개월 내	필수
개점지원교육	시스템 운영 교육 및 개점 지원		시기별 별도통지	
OJT	운영의 심화, 노하우 공유		시기별 별도통지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공단지 독학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입문교육	1일	220만원(부가세 포함)	-
개점지원교육	별도통지		시기별
OJT	별도통지		시기별

- 신규교육시 가맹점사업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채용한 직원이 가맹본부가 정한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추가 교육을 받고 이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개점이 지연되는 경우 이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 교육·훈련은 가맹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의사결정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에서 근무할 직원들도 입문교육을 이수 하여야 하며, 새롭게 채용한 직원의 경우도 입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귀하가 위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 계약이 해지 되거나 재계약시 평가 등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 당사는 공단기 독학관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1800-5272 또는 가맹지역본부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